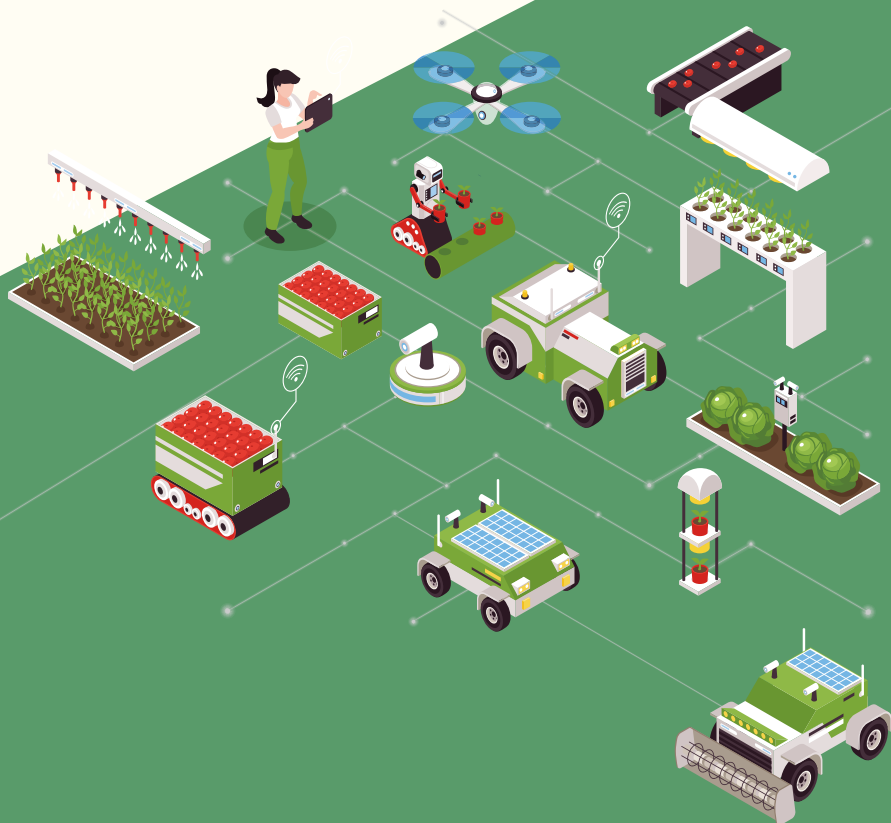


2022년 변경되는 농지제도 안내



시행일 : 2022년 5월 18일부터



- ☑ 직업
- ☑ 영농경력
- ☑ 영농거리

추가

-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추가

[illegible]

의무화

-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의무화

농지취득 시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 ☑ [농업인확인서]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 증명서류 제출 의무 없음
	농업인이 아닌 경우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의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 공유자 간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농업법인인 경우 ☑ [정관](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임원명부 및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회사법인에 한함)
	위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1차 250만원 > 2차 350만원 > 3차 500만원

공유취득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1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상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을
기재할 때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

2

공유자 간 구분
소유 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제출**
의무화

※ 단, 기존 공유관계가 형성된 농지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새롭게 공유관계가 맺어지는 경우에 한해 적용)

당초



위치구분 X

변경



위치구분 O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 연장

농업경영 목적	당초 4일 이내	변경 7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	당초 2일 이내	변경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	당초 2일 이내	변경 4일 이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당초 —	변경 14일 이내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조사대상

1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가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2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가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취득한 농지

3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가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4

농업법인 소유농지(전수)

5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전수)

6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전수)

7

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전수)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사유

☑ 제출서류

1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농지 임대차 계약서
(농지 사용대차 계약서)

2

농지에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3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증명서류 제출 의무 없음



과태료 부과

☑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 원

>

2차

350만 원

>

3차

500만 원

☑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300만 원

농지위원회 심의절차 신설

☑ 심의 대상자

-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2 농업법인
- 3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 4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 5 외국인
- 6 외국국적동포
- 7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어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